

WTO체제에서의 남북한 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

안덕근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정준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남북한 간 교역은 수많은 정치외교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부분이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체제(WTO)를 통해 국제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남북한 간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만 간주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대외교역에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남북한 교역을 WTO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은 남북한 FTA다. 남북한 FTA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기능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남북한 교역을 WTO협정상 비차별원칙 의무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FTA를 통해 구축해 둔 개성공단의 원산지특례조항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개성공단 투입재 비율을 제고하거나 생산 주체, 또는 공정의 중요도 등으로 역외가공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그리고 품목 군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생산구조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양허품목을 재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주제어: 남북한 교역, 개성공단, 원산지규정, 남북한 FTA

* 본 연구과정에서 좋은 제언으로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와 본 연구에 지원해 준 SSK 연구사업(NRF-2011-330-B00063) 및 아시아연구소(SNUAC-2014-007)에도 감사한다.

**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 공동저자

I. 서 론

남북한 간 교역은 수많은 정치외교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부분이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체제를 통해 국제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남북한 간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만 간주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대외교역에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꾸준히 FTA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진출로를 확보해 왔는데 한-미 FTA 이후에는 역외가공 제품에 대한 원산지특례 인정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FTA에서 도입되는 개성공단 관련 규정의 내용을 비교·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FTA 협상이 시급히 요구되는 필요성과 개성공단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II. 남북한 교역 관련 법적 체계

남북한 교역은 “민족 간 내부거래”로서 “수출·수입” 대신 “반출·반입”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반출·반입이란 물품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한 간의 물품이동을 의미하는데,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물품 이동도 포함하는 개념이다.¹ 북한 측 교역 당사자와의 접촉 및 상담은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남사업 공식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를 통하여거나 간접적으로 중국, 홍콩, 일본 등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진

1.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다.

반출·반입의 승인은 통일부 고시에 따른 “승인을 요하는 품목”²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외의 품목은 개별적인 반출입에 대해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의 반출입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간 물품수송은 제3국의 선박이 이용되는데, 이들 선박들은 제3국 항구를 단순 경유하거나 공해상을 통해 직운항하고 있다. 직운항에서 활용되는 주요 남북 항로는 인천-남포항로와 부산-나진항로가 있다.

1.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 배제

제3국을 단순 경유한 물품을 포함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 중에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중국 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는 바,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즉, 직접운송원칙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물품이 직접 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운송상의 사유로 단순 경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단순경유의 경우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 등을 한 것을 의미하며, 제3국으로 판매되거나 교역 또는 소비에 제공되지 않아야 하며 상품 상태유지 이외에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산 물품이 중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중국 진출구화물보관단으로부터 보세화물로 일시 보관 후 재반출되는 화물이라는 단순 경우 입증서류를 받아야 한다.

-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서 다루고 있는데, 해당 품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 사진, 필름, 엽서·연하장을 비롯하여 해당 고시 [별표 1]에 포함된 각종 수산물(건명태, 꽃게, 오징어 등), 농산물(마늘, 호박, 녹두, 팥, 고구마, 쌀보리, 벼 등)과 기타 식품류(고추장, 혼합조미료, 홍삼차 등).

북한산 물품에 대한 무관세대우는 국내법상 남북한 간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는 바, 관세 적용의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 가입 시에 제정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도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 간 거래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한 교역에 대한 무관세 근거는 남북한 간의 협의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과 북한 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 합의서 제15조는 “민족내부거래로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 나아가 남북교류·협력부속 합의서 제1조 제10항은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거래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및 ‘청산결제 합의서’ 등 4대 남북경협합의서 모두 그 전문에서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합작투자 등 남북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선언하고 있다.

반면,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의 내국세는 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의 목적상 관세표준으로 사용하는 물품 가격에 관해서는 “관세평가시행세칙”상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는 이하와 같이 규정한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2.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

남북한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관련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간의 관할권 문제로 다소 복잡적으로 되어 있다. 첫째, 2003년 7월 31일에 남북한 간에 채택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로서 원산지판정 기준, 확인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둘째, 통일부가 소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0조, 또한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가 있다. 셋째는 남북한 교역물품에 대한 통관업무의 원활화와 적성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관세청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이다.

이는 일반 수출입에 관한 원산지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동 법 시행령, 구체적인 요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확인 및 표시 등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관세청의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제시된 점과 대비된다.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게 되는데 『대외무역법』 또는 『FTA관세특례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동 고시 제5조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해당국을,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도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 직접재료비 중 남한산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와 개성공단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남한산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정한 물품 또는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 관세청장과 통

〈표 1〉 북한에서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구 분	표시방법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
원산지가 남한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	제3국산
개성공단에서 반입하는 물품 (원산지가 남한산으로 결정된 물품)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u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
개성공단에서 반입하는 물품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결정된 물품)	Made in D.P.R.K.(Gaesung)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

일부장관이 협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정한 물품은 없다. 만일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III. 남북한 교역 관련 WTO협정상 최혜국대우원칙의 문제

남북한 교역은 국내법상 통상정책차원의 조치가 부과되지 않는 민족 간 내부거래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WTO체제에서는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ured-Nation Treatment; MFN)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어 국제규범상 의무와 국내법상 제도가 상충하고 있다.

1. 최혜국대우조항 관련 법적 쟁점

최혜국대우원칙은 WTO 회원국이 여타 국가에 부여한 무역상 혜택을 다른 회원국들의 동종물품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타 국가의 WTO 회원국 여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⁴ 따라서 남북

4. GATT 1947 제1조 1항의 원문은 이하와 같다: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한 무관세 무역거래에 대해 최혜국대우원칙이 적용되면 교역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약 160개 WTO 회원국들에게 동일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바, 무역상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한 교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 사실상 전면적인 무관세교역을 WTO 회원국 전체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 남북한 간의 교역이 국내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의 물품 반출입이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WTO상의 최혜국대우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의 부과를 면제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별도의 관세영역을 상정하는 개념이며, 북한산을 명기하도록 규정하는 원산지 관련 법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GATT/WTO체제에서는 회원국의 자격이 독립주권국가가 아니라 마카오나 홍콩과 같은 독립 관세영역인 바, 이러한 국내 법체계만으로도 최혜국대우원칙 적용의 근거가 성립할 수 있다.

더욱이 19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주권국가를 회원국의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UN헌장에 근거하여 두 국가는 국제법상 독립국가로 상호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교역에 대해 최혜국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WTO체제에서는 법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의 문제를 GATT/WTO체제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원론적으로나마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GATT 협정 제25조 5항에서 규정하는 waiver 조항을 통해 포괄적으로 남북한 교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포함한 여타 GATT/WTO규범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⁵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5. GATT 1947: *Article XXV Joint Ac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5.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not elsewher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the

그러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투표의 2/3와 전체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요건이 부여되어 있어 용이하지 않다. 동 조항은 “WTO 설립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제9조에 도입되었는데, 투표 시 회원국들에 의한 지지 요건이 3/4으로 증가되어 있어 남북한 교역문제와 같이 정치외교적으로도 참여한 사안에 대해 이를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⁶

CONTRACTING PARTIES may waive an obligation imposed upon a contracting party by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any such decision shall be approv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votes cast and that such majority shall comprise more than half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lso by such a vote

- (i) define certain categories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which other voting requirements shall apply for the waiver of obligations, and
- (ii) prescribe such criteria as may be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6.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ticle IX Decision-Making*

3.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Ministerial Conference may decide to waive an obligation imposed on a Member by this Agreement or any of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provided that any such decision shall be taken by three fourths* of the Member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paragraph.

(a) A request for a waiver concerning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Ministerial Conference for consideration pursuant to the practice of decision-making by consensus. The Ministerial Conference shall establish a time-period, which shall not exceed 90 days, to consider the request. If consensus is not reached during the time-period, any decision to grant a waiver shall be taken by three fourths⁴ of the Members.

(b) A request for a waiver concerning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 Annexes 1A or 1B or 1C and their annexes shall be submitted initially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the Council for TRIPS, respectively, for consideration during a time-period which shall not exceed 90 days. At the end of the time-period, the relevant Council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Ministerial Conference.

*A decision to grant a waiver in respect of any obligation subject to a transition period or a period for staged implementation that the requesting Member has not performed by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shall be taken only by consensus.

4. A decision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granting a waiver shall state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justifying the decision, the terms and conditions

둘째, GATT 제24조에 근거하여 FTA를 체결함으로써 최혜국대우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제24조상의 FTA의 경우 우선 WTO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결국 북한의 WTO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는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GATT/WTO체제의 관행은 법 원칙과는 다소 괴리를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하의 절에서 상술한다.

2. 동서독 사례와의 비교

남북한 교역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큰 동서독 간의 거래는 ‘내독거래 (Innerdeutscher Handel)’라 하여 구(舊)독일 양국도 일반적인 대외무역과는 별개의 교역으로 다루었다. 서독이 ‘내독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많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분단 이후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투자가 요구되던 동독도 내독거래를 더욱 절실하게 요망하였다.

내독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서독 정부는 1951년 9월 20일 ‘독일 마르크(DM-西獨) 유통지역과 독일마르크(DM-東獨) 유통지역 간의 교역협정’(‘베를린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협정은 1960년 8월 16일의 전면 개정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1990년 통독될 때까지 내독거래의 법적 근간을 이루었다(페터 가이, 2003: 3-4). 이 협정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최성근, 2009: 21-22):

1) 내독거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독일이 원산지인 물품에 국한된다. 예외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waiver, and the date on which the waiver shall terminate. Any waiver granted for a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shall be reviewed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not later than one year after it is granted, and thereafter annually until the waiver terminates. In each review, the Ministerial Conference shall examine wheth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justifying the waiver still exist and whether the terms and conditions attached to the waiver have been met.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the annual review, may extend, modify or terminate the waiver.

적인 대상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 2) 거래 대상 물품은 물품목록에서 정해진다. 통일 당시 이 물품목록에 의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3) 원칙적으로 내독거래는 일방이 타방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만큼 타방도 일방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로 하는 것이 청산거래시스템이다.
- 4) 그러나 매일 매입과 매출을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이자 차월, 이른바 스윙제도를 채택하였다.
- 5) 서베를린도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이 조약의 적용범위가 DM 통화지역인 서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독거래의 특수성은 GATT와 유럽경제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에 의해서도 승인되었다. 우선, 1951년 6월 21일자의 GATT 가입결정 제1(b)항에서는 “GATT 체결국단은 GATT 제1조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GATT 가입으로 인해 독일에서 생산된 상품의 독일 내 무역의 현 지위나 조치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⁷⁾고 결정함으로써, 내독거래에 근거한 최혜국대우 의무 적용을 배제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가입결정상의 ‘내독거래’ 규정은 GATT 제33조에 의한 체결국단의 결정이며, 제25조에 의거한 waiver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서독은 ‘내독거래’에 관하여는 가입 시에 이미 GATT 의무 면제 결정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별도로 waiver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한편, ‘내독거래’의 지위에 관한 동 GATT 결정에 대해서 체결국에 의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으나 이후 재심사를 요구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1957년 3월 25일자의 ‘내독거래 및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정서(Protokoll über den innerdeutschen Handel und die damit zusammenhän-

7. 원문은 이하와 같다. “The Contracting Parties further agree tha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 of the General Agreement, the acces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ll not require any modification in the present arrangements for, or status of, intra-German trade in goods originating within Germany.”

genden Fragen)’를 통해 유럽경제공동체내에서도 내독거래가 승인되었는데, 동 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최성근, 2009: 38-39).

- 1) 서독기본법(西獨基本法)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독일 영역과 적용범위 밖에 있는 독일 영역 간의 거래는 내독거래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독일에서의 적용은 이 거래의 현존하는 체제의 어떠한 변경도 요구하지 않는다.
- 2) 각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및 집행위원회에게 서독기본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독일 영역과의 교역에 관한 협정 및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각 가맹국은, 이러한 시행이 공동체 시장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여타 가맹국의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적합한 예방조치를 갖추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3) 각 가맹국은, 타방 가맹국이 서독기본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독일 영역과의 거래로부터 당해 국가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내독거래의 국제적 승인은 두 독일국가의 국제기구 가입과 상관성이 있었는데, 서독의 유럽경제공동체 가입과 동독의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 가입이 국제적인 지지기반의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내독거래의 특수성이 유럽경제공동체에 의하여 승인됨에 따라 동독으로부터의 서독 반입품은 유럽경제공동체의 공동관세법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유럽법원의 1974년 10월 1일자 ‘동서독무역품에 대한 비관세결정’⁸에 의해 그 효력이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동독은 서독시장에서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 EC) 회원국을 제외한 제3국에게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8. Urt. vom 01.10.1974, Slg. 1974, 1147 참조.

IV. 남북한 경제협력의 WTO체제상 정합성(整合性) 제고 방안

1. WTO 최혜국대우원칙 의무면제(waiver)조항 원용 가능성 검토

Waiver 조치의 경우 여하한 사유로 협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의무를 면제받는 법적 장치이다. GATT 제25조 5항과 WTO 설립협정 제11조 3항에서 이러한 waiver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해서 부여된다는 점과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준의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예를 들어 1985년 미국은 『캐리비안만 경제부흥법』에 의거하여 캐리비안국가들에 대해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waiver를 통해 최혜국대우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다.⁹ WTO체제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에는 waiver 건수가 115건에 이르렀다.¹⁰

남북한 교역의 경우 현재 WTO체제에서는 드물게 휴전상황의 분단국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통일을 추진하는 상황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해 시도하는 남북한 교역은 동 조항상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동서독 간 내독교역에 대해 이미 특례를 인정한 바 있는 GATT/WTO의 관행을 감안하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¹¹

그러나 실제로 waiver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3/4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¹² 현재 160개 회원국 중에서는 120개 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9. GATT, L/5779; BISD 31S/20.

10. WTO, Analytical Index: Guide to GATT Law and Practice, 887(1995).

11. waiver 요청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1969년 EEC가 이스라엘 및 스페인산 감귤류에 대한 관세 감축에 관해 waiver를 신청한 것이나, 1970년 그리스가 소련산 제품에 대해 부여한 특혜에 대한 waiver 등은 승인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GATT, C/M/59, 61, 63, 65; BISD 17S/61 & 18S/179 참고.

GATT 체제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들 중 2/3의 지지와 전체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라는 2중 구조의 요건이 부과되었으나, WTO 설립협정에서는 “합의(consensus)”가 도출되지 못하여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전체 회원국 중 3/4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투표 시에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지지 요건을 충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협정 관련 각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행기간의 적용을 받는 협정상 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요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적용되는 특혜조항과 관련하여 한층 어려운 문

12. WTO 설립협정 제IX조의 관련 조항은 이하와 같다:

3.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Ministerial Conference may decide to waive an obligation imposed on a Member by this Agreement or any of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provided that any such decision shall be taken by three fourths of the Member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paragraph.
 - (a) A request for a waiver concerning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Ministerial Conference for consideration pursuant to the practice of decision-making by consensus. The Ministerial Conference shall establish a time-period, which shall not exceed 90 days, to consider the request. If consensus is not reached during the time-period, any decision to grant a waiver shall be taken by three fourths of the Members.
 - (b) A request for a waiver concerning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 Annexes 1A or 1B or 1C and their annexes shall be submitted initially to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the Council for TRIPS, respectively, for consideration during a time-period which shall not exceed 90 days. At the end of the time-period, the relevant Council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Ministerial Conference.
4. A decision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granting a waiver shall state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justifying the decision,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waiver, and the date on which the waiver shall terminate. Any waiver granted for a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shall be reviewed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not later than one year after it is granted, and thereafter annually until the waiver terminates. In each review, the Ministerial Conference shall examine wheth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justifying the waiver still exist and whether the terms and conditions attached to the waiver have been met.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basis of the annual review, may extend, modify or terminate the waiver.

제점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농업협정상의 시장개방과 농업보조금 감축 의무 등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여타 회원국들에 비해 장기간의 이행기간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waiver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TO 회원국들의 합의가 요구되는 바, 사실상 waiver 확보가 불가능해질 소지가 크다.

또한 waiver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는 남북한 교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료기한을 두고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허용될 뿐 아니라, 그 적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요건이 제시되며 1년 이상의 waiver가 부여되는 경우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실무적으로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 에 의해 연례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WTO 각료회의에 의한 연례심사절차는 향후 남북한 교역 활성화에 있어 예민한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미국과 같은 주요 회원국들이 여전히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하여 경제제재조치를 부과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waiver 규정을 통한 남북한 교역의 특례인정은 북핵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당분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여타 관련 WTO 조항 및 의무 분석

1) 협정의 개정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가장 극단적인 방안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한 쌍방에 의해 천명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WTO 차원에서는 남북한 교역의 특수성을 협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해서 반영시키는 방안이다. 선례로는 GATT 제24조 11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교역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¹³ 제24조 11항

13. GATT 1947: PART III *Article XXIV Territorial Application – Frontier Traffic –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s* 11조 원문은 이하와 같다:

의 경우 양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온 사실을 고려하여, GATT상의 제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상호무역관계가 확고하게 수립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인정되며, 양국 간의 특별대우조치는 “GATT상의 일정한 조항으로부터 일탈할 수 있으나 협정의 목적에는 일반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제한이 부가되어있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한 핵심은 이러한 회원국 간 특수관계에 기인한 교역에 관한 법적 예외조항의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WTO 협정을 개정하여 남북한 교역에 대한 특례를 성문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입조항 활용

남북한 교역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또 다른 대안은 WTO 설립협정 제12조¹⁴⁾의 가입조항을 사용하여 북한의 WTO 가입 시에 서독의 사

11. Taking into account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ing out of the establishment of India and Pakistan as independent States and recognizing the fact that they have long constituted an economic unit,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the two countries from entering into special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the trade between them, pe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ir mutual trade relations on a definitive basis.*

Ad Article XXIV, Paragraph 11

Measures adopted by India and Pakistan in order to carry out definitive trade arrangements between them, once they have been agreed upon, might depart from particula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ut these measures would in general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Agreement.

1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ticle XII Accession* 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Any State or 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its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 and of the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may accede to this Agreement, on terms to be agreed between it and the WTO. Such accession shall apply to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nexed thereto.

례를 활용함으로써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방안이다. GATT체제에서 서독이 동독과의 거래를 내독거래로서 인정받은 계기와 근거가 바로 GATT 제33조¹⁵의 가입조항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WTO체제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한 규정이 가입조항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서독의 선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남한은 이미 WT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입조항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사실 1994년에 기존의 GATT를 대체하여 WTO를 새롭게 출범시키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Uruguguay Round; 이하 UR)협정을 서명·비준하던 때가 남북한 교역 문제의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을 획득할 수 있었던 기회였으나,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 관계뿐만 아니라 쌀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WTO에는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명시적인 절차규정이 없지만 신규가입절차와 동일하다고 이해된다. WTO 가입절차는 가입희망국이 제공할 양허의 수준에 관한 협의와 이에 대한 기존회원국의 동의라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되며 전체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남한이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려고 하면 다른 회원국들은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양허를 요구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2/3 이상의 찬성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 과정에서 많은 인적·물적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방안은 그다지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북한이 WTO에 가입할 때, 남한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가입조건에 명시하고 각료회의에서 가입과 동시에 남북한 간 교역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15. GATT 1947 *Article XXXIII Accession* 원문은 이하와 같다: A government not party to this Agreement, or a government acting on behalf of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its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 and of the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may accede to this Agreement,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that territory, on terms to be agreed between such government and the CONTRACTING PARTIES. Decis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taken by a two-thirds majority.

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북한이 WTO 가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려면 획기적인 북한경제체제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요구되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3) 권능조항(Enabling Clause) 활용

GATT의 「1979년 11월 28일자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호혜 및 차별적, 우호적 취급에 관한 결정」(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이하 Enabling Clause) 제1항은 “GATT 제1조에도 불구하고 체결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다른 체결국에 부여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우호적인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⁶ 이 조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합법화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특혜부여는 선진국의 권한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선진국의 의사에 의하여 그 특혜부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권능조항(Enabling Clause)’이라고도 한다.

이 조항을 원용하여 남북한 교역에 대한 WTO의 적용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인 남한이 개발도상국인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남 북한 교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직 남한은 도하협상(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서도 드러나듯이 농업부문의 보호를 위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어 선진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선진국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남 북한 교역이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지원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을 WTO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것이 북한에 의해 용인되지 않을 소지가 크다.

나아가 이 조항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고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제3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모색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권능조항’ 제2조 c항¹⁷은 개

16. 해당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 of the General Agreement, contracting parties may accord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without according such treatment to other contracting parties.

발도상국 상호 간 관세면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와 4대 남북경협합의서¹⁸를 이리한 관세면제협정으로 보아 GATT로부터의 의무면제를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남한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엄밀하게 법적인 차원에서는 동 규정이 회원국 상호 간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북한이 비회원국인 이상 그와 같은 협정체결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¹⁹

4) 국가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s)

GATT 제21조는 “체약국의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 물질, 군수품의 거래에 관한 조치나 국제연합헌장의 의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WTO가 국가안보를 위한 광범위한 예외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자국의 안전보장은 당해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일견 포괄적인 예외규정으로 국가안보 문제가 핵심인 남북한 간의 교역에 관한 특혜조치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선 상기 예외조치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다. 즉, “핵 물질, 군수품의 거래에 관한 조치나 국제연합헌장의 의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국가안보가 문제시 되는 국가 간의 교역을 포괄적으로 예외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

17. 권능조항 제2조 c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c) Regional or global arrangements entered into amongst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s an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or conditions which may be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imported from one another;

18. ‘4대 남북경협합의서’라 함은 본 논문 142쪽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19. 그러나 “회원국” 간의 FTA 체결 관련 의무에 대해서는 이하의 절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을 근거로 하는 조치로 인하여 통상이익을 침해 받은 회원국이 WTO 분쟁 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제소 — 특히, 비위반 제소 — 를 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시 아르헨티나가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GATT는 1982년 11월 30일에 「GATT 제21조에 관한 결정 (Decision Concerning Article XXI of the General Agreement)」²⁰을 채택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어떤 회원국이 제21조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가능한 상세하게 이를 관련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하고 또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모든 회원국들은 GATT상의 권리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안보상 예외조치에 대해서도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광범위한 예외조치가 허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특혜조치를 실제로 허용한 적은 없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는 교역이 제2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남한의 국가안보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 간주하거나 또는 유엔헌장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에 대한 WTO 차원의 예외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보조금협정 문제

남북한 교역이 민족내부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현 시점에서 시급한 법적인 문제는 WTO 보조금협정 관련 사안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개성 공단에서의 생산을 위한 물류비나 투자비에 관한 각종 보상이 국내 생산에 대한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이 보조금협정상 “국경내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되는 바, 보조금협정상 규범이 온전히 적용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북한 지역 내에 주재하는 생산설비에 대한 지원이나 동 생산품의 판매, 유통 등은 여전히 한국

20. GATT, BISD 29S/23(1983).

내에 소재한 기업들에 의해 수행되는 역외가공형태인 바 보조금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성공단 생산품들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보조금협정상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이나 수입대체보조금(import substitution subsidies)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또한 보상의 성격상 명확하게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여타 교역상대국의 수출이나 국내 생산에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규정상의 의무에 저촉될 소지가 크게 된다.

동 사안은 남북한 교역에 관해 특례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 역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향후 남북한 교역에 관하여 긍정적인 법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려해야 할 쟁점이다.

3. 남북한 FTA 체결과 관련된 통상법적 쟁점

GATT협정 제24조 제5항은 “GATT 협정은 동 지역 내와 기타 국가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이지 않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원국 영역 간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거나 이에 필요한 잠정협정의 채택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이러한 FTA를 체결하기

21. GATT 제24조 5항의 원문은 이하와 같다:

5. Accordingl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s between the territories of contracting parties,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or the adoption of an interim agreement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of a free-trade area; Provided that:

(a) with respect to a customs union, or an interim agreement leading to a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imposed at the institution of any such union or interim agreement in respect of trade with contracting parties not parties to such union or agreement shall not on the whole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regulations of commerce applicable i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such union or the adoption of such interim agreement, as the case may be;

(b) with respect to a free-trade area, or an interim agreement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freetrade area, 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위한 ‘일정한 조건’이란 실제적 조건과 절차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 조건은 FTA를 체결하는 회원국 상호 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무역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대내적 요건과 당해 FTA를 체결하는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 이전에 비해 무역장벽을 더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대외적 요건을 의미한다. 한편, 절차적 조건은 FTA내용을 WTO에 통보하여 WTO로부터 일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²²

따라서 북한과 FTA를 체결하는 데는 waiver 부여조치와 같이 WTO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여전히 다른 형태의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우선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로서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참여국들이 WTO 회원국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GATT 체제에서는 비회원국과의 FTA가 흔히 발생한 바, 상기 쟁점이 종종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1960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가 Latin American FTA를 체결했을 때와 EFTA²³가 체결되었을 때 일부 FTA 회원국들이 GATT 체약국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GATT상 최혜국대우원칙 예외를 위해 제24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다. 특히, 일부 GATT 체약국은 제24조의 적용이 불가하므로 waiver를 통해 동 FTA상의 특혜무역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²⁴ 그러나 이와 같은 일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들이 GATT 비체약국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실제로 체결된 FTA가 거부되거나

commerce maintained in each of the constituent territories and applicable at the formation of such free-trade area or the adoption of such interim agreement to the trade of contracting parties not included in such area or not parties to such agreement shall not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 or interim agreement as the case may be; and

- (c) any interim agreem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b) shall include a plan and schedule for the formation of such a customs union or of such a free-trade area 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

22. FTA 관련 법적 요건은 Mathis(2002) 참조.
 23. EFTA는 유럽자유무역연합(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자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국을 포함하고 있다.
 24. GATT, BISD 9S/87, para. 31(1960).

유사한 제재조치가 취해진 바는 없다.

또한 GATT 제24조 10항은 일반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3의 지지에 의해 FTA “제안”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⁵ 실제로 동 규정에 의거하여 1951년 GATT 계약국인 니카라과가 비계약국인 엘살바도르와 FTA를 체결했을 때 GATT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GATT는 필요한 경우 재검토를 단서로 동 FTA를 승인하였다.²⁶ 니카라과는 1956년 비계약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이 포함된 Central America FTA에 가입하면서 다시 제24조 10항에 근거하여 승인을 요청했고, 5년 후 재심사 시점이 명시된 이외에는 유사한 형태로 GATT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이처럼 GATT 비계약국 또는 WTO 비회원국 지위에 대해 FTA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는 있으나,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적용된 예가 없어 현재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WTO체제하에서도 비회원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EC 간의 FTA에 대해서 동일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었으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위원회에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쟁점을 부각하지 않았다.²⁷

25. 원문은 이하와 같다. “10. The CONTRACTING PARTIES may by a two-thirds majority approve proposals which do not full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5 to 9 inclusive, provided that such proposals lead to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or a free-trade area in the sense of this Article.”

26. The Free-Trade Area Treaty Between Nicaragua and El Salvador, Decision of 25 October 1951, BISD II/30. 관련 부분은 이하와 같다.

“The CONTRACTING PARTIES deci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XIV, paragraph 10, of the General Agreement, that the Government of Nicaragua is entitled to claim the benefits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relating to the formation of free-trade areas, and decide to review the above decision, if at any time after study of reports furnished by the Government of Nicaragua and of other relevant data, they find that the operation of the Free-Trade Treaty is not resulting in the maintenance of a free-trade area in the sense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27. ‘Examination of the Interim Agreements between the EC-Bulgaria and EC-Romania, and of the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the European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GATT 제24조의 대칭 조항인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²⁸ 제5조 1항의 경우 WTO 회원국 간의 FTA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²⁹ 즉, 1940년대 중반 마련된 GATT와는 다르게 기존의 GATT 관행과 역사를 반영하여 새로이 마련된 GATS 규정에서 FTA 관련 법률요건에 회원국들간의 협약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GATT 제24조의 발동요건으로 WTO 회원국을 전제로 하는 법률상 요건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GATT/WTO체제에서의 법적 발전과정은 WTO 비회원국인 북한과 향후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비회원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리 중요한 협상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될 소지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FTA 체결과정에서 최종 협정의 전 단계로 ‘잠정협정’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잠정협정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 남북한교류의 초기 단계에서 남북한 간에 관세면제조치 및 여타 분야별 경제협력조치를 FTA 체결을 위한 잠정협정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가 실질적으로 FTA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격적인 체제의 전환을 수반해야 하므로 남북한 교류에 대한 국제통상법적인 근거를 온전한 FTA를 통해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체제의 구조와 진전 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FTA 협상을 선언하고 상당 기간 동안은 남북한 간 교역을 이행

Communities and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Note on the Meeting of 5 November 1996, WT/REG1/M/1; WT/REG2/M/1; WT/REG7/M/1; WT/REG8/M/1; WT/REG9/M/1 (9 June 1997).

28. 1970년 후반 이후 서비스 교역이 급증하고 그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UR 때 처음 논의되어 1995년 WTO와 함께 출범하였다. 총 6부(Parts) 29개 조항(Articles)과 8개 분야별 부속서(Annexes)와 8개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s), 1개의 양해(Understanding) 및 각국별 양허표(Schedule)로 구성되어 있다.
29. GATS 제5조 1항의 관련 부분은 이하와 같다: “1.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any of its Members from being a party to or entering into an agreement liberalizing trade in services between or among the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기간에 적용하는 잠정협정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FTA 체제에서의 개성공단 규정 비교분석

현재 우리가 체결한 FTA들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해 “역외가공”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특례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최초로 체결한 칠레와 한-미 FTA 이후 체결한 EU,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FTA에 포함되어 있다.³⁰ 그러나 FTA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은 개성공단으로 지역을 국한하는 것부터 생산방식에 연동하는 방식까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을 국한하여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현재 인도, 페루 및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적인 한계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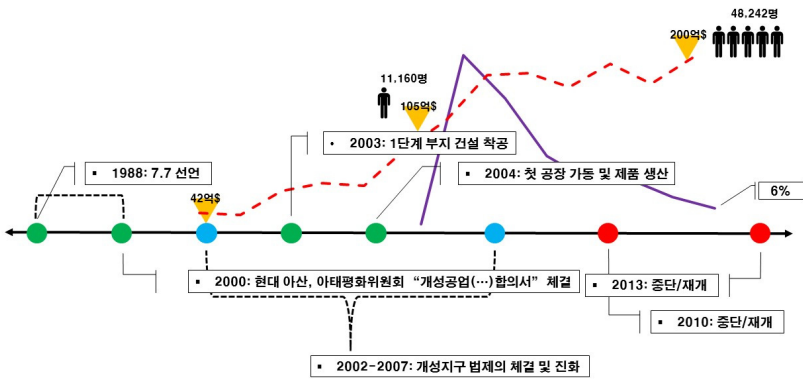


그림 1. 개성공단 발전과정 개요³¹

30. 대한민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2004.04.01. 발효) 협정문에는 아예 역외가공 조항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협정이 4월에 발효된 것에 반해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된 것이 같은 해 12월인 것 때문이다.
31. 개성공단 사업 추진의 개요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발전과정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

〈표 2〉 개성공단 ‘한정’ 방식 FTA

대상국	발효(타결)일	원산지 인정방식
인도	2010.01.01.	- 북한의 개성 공업 단지의 9.9km ² 지역(협정문에 지도포함)에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상품 - HS코드 6단위 기준 108개 상품(부록 3-나-1에 명시)
페루	2011.08.01.	- 부속서에 100개 품목(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 규정 - 비원산지(개성) 투입의 총가치는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이하 FOB)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콜롬비아	(2012.06.25.)	- 비원산지(개성) 투입의 총가치는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주: 타결일은 ()로 표시. 발효(타결)일 순으로 나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정문들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참고문헌: 한-인도 CEPA 협정문, 한-페루 FTA 협정문,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시하는 인도의 경우와 같이 각 FTA마다 다소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기 방식은 역외가공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다. 우선 이 세 FTA 협정 모두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 어떠한 추가 역외가공지역의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인도 CEPA)의 경우는 “북한의 개성 공업 단지의 9.9km²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실제 해당 지역의 지도까지 협정문에 포함시키며 엄격한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 페루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 지리적 제한에 추가하여 품목적 제한도 함께 두고 있는데, 인도는 HS코드 6단위 기준 108개 상품(부록 3-나-1에 명시), 페루는 100개 품목(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는 비원산지 허용 역외비용 비율을 40%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와 한-EU FTA는 개성공단을 현 시점에서 역외가공지역

구소(2012)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통일부(2005) 『남북교역실무 안내』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2008) 『개성공단 5년 - 개성에 가면 평가가 보인다』를, 남북한 교역의 변화 추이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KDI)(2014)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제5호를 참고하였으며, 개성공단 생산액 대비 수출액의 증감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2008) 『개성공단 Q&A』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방식

대상국	발효(타결)일	협정문 내 관련사항
미국	2012.03.15.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결정 - 역외가공지역 지정기준(예시): ① 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 역외가공지역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관행, 임금 관행, 영업 및 경영 관행(단, 북한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 규범을 참조)
EU	2011.07.01.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함(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 후 1년 후 개최 -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 시 수시 개최 가능)
터키	2013.05.01.	- 한-EU FTA와 동일(위원회)
뉴질랜드	(2014.11.15.)	- 한-미, 한-EU FTA와 유사(위원회)
호주	2014.12.12.	-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조항을 도입(부속서 3-나) - 협정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회의 개최, 이후 연 2회 회의개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대상임을 각주로 명시 -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
캐나다	2015.01.01.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 역외가공지역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성을 검토 함(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때 회합함)

주: 타결일은 ()로 표시. 발효(타결)일 순으로 나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정문들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참고문헌: 한-미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한-터키 FTA 협정문, 한-호주 FTA 협정문, 한-캐나다 FTA 협정문,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다. 즉, 현 시점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구성하여 향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역외가공제품으로 인정하는 ‘위원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 외에도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들이 이러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는 역외가공지역 지정기준을 기술하며,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관행, 임금 관행, 영업 및 경영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당분간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상품 인정

〈표 4〉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 FTA

대상국	발효(타결)일	원산지 인정방식
싱가포르	2006.03.02.	- 개성공단 또는 한반도의 여타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것으로 양해되는 제품 - HS 6단위 4,625개
EFTA	2006.09.01.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한국산 원자재, 중간재 등이 일정비율 이상 사용 시 인정 - 개성공단 이외에 향후 북한에 유사한 공단 설립 시 동일한 혜택 향유 가능
아세안 ³²	2007.06.01.	- ASEAN 회원 국가별로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에 정인 품목(232개) 중 100개 품목에 대한 부분적 인정 - 역외(개성)투입의 총 가치가 최종가의 40% 이하, 당사국(한국) 재료 총 가치가 최종재 총 가치의 60% 이상인 경우 역외 가공에 대한 원산지인정 - 개성공단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자국의 국내산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협정 발효 5년 후, ASEAN 회원국 각국이 개성공단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본 양해각서의 적용 철회 가능
중국	(2014.11.10.)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은 한국과 중국 모두 설치할 수 있음 - 별도 절차 없이 인정
베트남	(2014.12.10.)	- 한-아세안 FTA와 마찬가지로 모두 100개 품목을 개성공단 품목 지정 - 양은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70여 개 품목이 아세안 때와 다름(이미 8년 전 발효한 한-아세안 FTA는 현 상황을 다 반영 못함. 이번에 현지 생산업체들로부터 현재 생산 중이거나 추후 생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설문조사. 이를 토대로 70여 개 품목을 교체함. - 한-아세안보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

주: 타결일은 ()로 표시. 발효(타결)일 순으로 나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정문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참고문헌: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한-EFTA FTA의 주요내용, 한-아세안 FTA 협정문,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한-베트남 FTA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을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중국, 한-베트남 FTA에

3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5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서 1967년 8월 8일에 설립되었고, 회원국은 2014년 현재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으로 총 10개국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동시에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양자 FTA도 타결하였다.

서는 소위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으로 역외가공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이라 함은 ‘개성공단 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리스트’ 방식에 근거하나,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만으로 한정짓지 않으며, 해당 양허 품목의 수나 범위도 보다 포괄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FTA협정문에서는 “개성공단과 한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라고 규정하며, 한-아세안 FTA협정문에서도 “Gaeseong City and its surrounding area of North Korea”라고 표기하여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품목의 수도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인데, 앞서 한-인도 CEPA와 한-페루 FTA가 약 100여 개 품목을 제한한 것에 비해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는 약 4,625개 품목을 양허하였다.

특히 한-중 FTA에 포함된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의 역외가공규정은 주목할 부분인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한국과 중국 모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설립주체를 한국으로 제한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북한 내에 중국도 역외가공지역을 설정하고 ‘북한산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생산 및 수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베트남이 아세안에 속한 국가인 만큼 한-아세안 FTA와 비슷한 형태로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FTA 모두 100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가 이미 발효된 지 8년여의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현지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생산 중이거나 앞으로 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100여 개의 품목 중에 70여 개 품목을 한-아세안 FTA와는 다르게 교체하였다. 개방 수준은 한-아세안 FTA와 비슷하나 그 품목의 질적인 관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 론

남북한 교역의 확대는 수많은 정치외교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통

일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한 남북한 교역을 WTO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은 남북한 FTA다. 남북한 FTA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기능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남북한 교역을 WTO 협정상 비차별원칙 의무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FTA를 통해 구축해 둔 개성공단의 원산지특례조항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 등에서 규정된 최대 40%의 개성공단 투입재 비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일본의 FTA에서는 2002년 협상타결 시 합의한 투입재 비율을 2007년 재협상을 통해 수정한 바 있고, 다른 FTA에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가능한 비율식 제한 외에 생산 주체(the principal manufacturer), 또는 공정의 중요도—예를 들어, more than minor processing—나 수준—예를 들어, one or more processes of manufacture—등으로 역외가공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 도입되기도 한다.³³ 또한, 품목 군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생산 구조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양허품목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FTA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EU FTA 등에서 도입된 위원회 방식을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참여한 군사외교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이미 국교를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 유럽, 호주 등 국가들과의 협상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진적인 협정 개선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한-미 FTA에서도 개성공단 방식의 조항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흔히 과도하게 정치적 의도로 인식되는 “개성공단”을 한국의 FTA내 역외가공에 대한 인정 문제로 부각함으로써 본연의 경제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33. Komuro, Norio.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 Vadis?”* 참고 실제로 싱가포르-일본 FTA의 경우 2002년 당시 역외비율을 40%로 제한했으나,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2007년부터는 60%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생산 주체 및 공정의 중요도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문에 언급된 ‘the principal manufacturer’, ‘one or more processes of manufacture’, ‘more than minor processing’의 내용과 ‘insufficient processing’ 등은 각각 싱가포르-미국 FTA, 이스라엘-캐나다 FTA와 싱가포르-일본 FT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래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근간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4-12-10 심사일자: 2014-12-25 게재확정: 2014-12-29

참고문헌

-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2012.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관세청. 2010.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 최성근. 2009.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통일부. 2005. 『남북교역실무 안내』.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8. 『개성공단 5년 -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 _____. 2008. 『개성공단 Q&A』.
- 통일원. 199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 페터 가이. 2003. 「1949-1989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교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한국개발연구원(KDI). 2014.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제5호.
- Komuro, Norio. 2009.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 Vadis?"* KIEP.
- Mathis, James. 2002.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GATT/WTO: Article XXIV and the International Trade Requirement*. Den Haag: T.M.C. Asser Press.
- WTO. 1994. *The Legal Tex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Analytical Index: Guide to GATT Law and Practice*.

A Study on Internal Trade between South/North Korea in the WTO System and Gaesung Industrial Complex

Dukgeun Ahn

Professor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joon James Park

Researcher,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erce &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pite of numerous political and diplomatic dilemma, internal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be continued and expanded. The Government of Korea, in fact, has enhanced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through Gaesung Industrial Complex.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WTO system, however, the issues in internal trade could no longer be a sole problem of the two Koreas, but often cause controversies, particularly related to non-discriminatory treatment measure. In order to justify the internal trade and the special treatments between the two under the WTO regime, the FTA between the two Koreas could be a key step to push forward. The FTA between the South and North, in long-term, could vitalize the mutual exchanges, yet in short-term, could also motivate the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and make the existing privilege legitimate. On the same token, th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rules of origin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the recent FTAs of South Korea still need some revisions and improvements. It is significant to further negotiate to raise the rate of non-originating content, or recognize the origin based upon the identity of the principal manufacturer or the importance of processing. When the Agreement restricts the types of items, it is required to readjust and expand the types, reflecting the latest structure of production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Keywords: South-North Korean Trade, Gaesung Industrial Complex, Rules of Origin, South/North Korean FTA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Tel_02-880-9249 E-mail_dahn@snu.ac.kr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Tel_02-880-4040 E-mail_jj10907@snu.ac.kr